

대법원 2018. 12. 28 선고 2018다265133 판결 [횡령금반환청구및구상금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2. 28 선고 2018다265133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8. 23 선고 2017나214092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유한회사 양정종합주류

피고, 피상고인 1. A 주식회사

2. B

판결 선고 2018. 12. 28.

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. 8. 23. 선고 2017나214092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기택

대법관권순일

대법관박정화

주심대법관김선수